

## 4차 기록관리혁신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 회의 개요 >

- 일 시 : 2018. 5. 2.(수) 14:00-16:30
- 장 소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 참석자 : 총 9명
  - 자문위원 : 손동유(위원장), 전진한, 박종연, 이정연
  - 국가기록원 : 이소연(원장), 허승원(정책기획과장), 이젬마, 김정숙, 정상희
- 주요 자문사항
  - 공공기록물법령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
  - 기록관리혁신 추진단, 자문위원회 활동 방향

### <주요 내용>

#### □ 공공기록물법령 개정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를 청탁금지법처럼 법률에 명시하기를 제안함. 또한 조사연구점토서의 삭제는 동의하지만, 회의록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대로 두길 바람. 무단 폐기도 이런 식으로 개정된다면 좋을 듯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학회, 협회가 빠졌는데 다른 규정을 고려하는지 궁금함
- ⇒ 법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공무원만 당연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록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표성을 부여함이 어떤지
- 기록공개서비스와 관련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소장 기록물 중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5년 재분류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 원칙을 확대하였으면 함. 그리고 이러한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열람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함.  
정보공개청구는 기본적으로 현용 기록을 대상으로 함. 열람을  
전체열람과 제한적 열람으로 구분하면 됨. 비공개열람은 열람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지우고 공개하는 제도를 고려하기를 바람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규정이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되고, 기록관에서는 비공개 1, 6호 제외하고 5년  
주기 재분류 지속하였으면 함. 열람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  
표의 책임은 열람자 개인의 몫으로 두고, 정보공개청구는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파격적인 제도가 될 것임

○ BRM의 관리 권한을 기록관리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없다면 새로운  
기록분류체계가 더 적극 고려해야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 실무자들은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도 큰 작업이고  
어렵다고 생각해서인지 BRM을 그대로 사용하려 함

⇒ 역설적으로 현장에서 BRM이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제도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분류체계를 현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나옴

⇒ 제도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설명되지 않은 채 새로운 걸  
만들라고 하면 현장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음

⇒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의 목소리 뒤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니 곤란함

⇒ 의견을 수렴하되 기록원이 기본 입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당장 새로운 기록관리 분류체계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에게  
BRM을 버리고 간다고 기록원이 정해서 말할 수 없음. 새로운  
분류체계로 가더라도 BRM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가야할 것임.  
BRM을 활용하되 실제 기록을 잘 분류할 수 있는 분류체제도

가져야 함

⇒ 또한 BRM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폐기하면 그 순간 기록분류체계가 없어지는 것임. 이에 대비해서 새로운 분류체계 구축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되 바로 BRM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기존대로 유지한다를 정할 수는 없는 문제임

⇒ 그래서 새로운 분류체계 안까지 공론화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음. 정부산하 기관은 BRM을 사용하지는 않음에도 지침에 BRM을 만들라고 되어 있음. 수정되어야 함

○ 행정데이터세트의 경우, 탈보관주의, 즉 이관을 전제로 하지 않고 통제와 관리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기관에 시스템은 있는데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라는 인벤토리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미임. 단,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안시스템 등 몇 가지는 제외 될 것임

⇒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관련된 관리는 생산기관에서 하고, 국가기록원은 이 시스템에 기록관리 상 영향을 미칠만한 심대한 변화가 생기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겠다는 의미임. 모든 걸 다 관리하겠다는 뜻은 아님. 데이터세트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도 논의하고 있음. 이 정도 수준의 관리임에도 현장에서는 기록관이 왜 데이터세트를 관리까지 해야 하는지 불만이 많음. 그러나 기록관리의 입장에서는 기록으로 선언하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함

⇒ 이것 또한 조직의 문제와 함께 풀어줘야 함

○ 제19조 7항 개정안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로만 하지 말고 '생산 및 관리 상태'로 해야 함. 이래야 생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관리만

물으면 안되고 생산과 관리의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함

⇒ 반영하겠음

○ 기록관 문제를 해결하려면 논란이 있는 것은 빼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어떤가.

⇒ 법률은 자주 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현장에서 기록관 기능(제13조 2항) 개정안 중 제1호인 기록물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은 받아들이는데, 제2호인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관한 기준 수립'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평가나 점점의 철퇴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2호를 가지고 시범사업 중심으로 선도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 이 조항이 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준다면 이 조항을 기록관에서 수용할 것임

⇒ 기록관리 기준 수립이라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일이 많아 보임

⇒ 기록관리 대상에 대한 기준임, 무엇을 기록화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게 할 것인지 기관의 고유 업무를 분석하라는 의미임. 공통업무에 관한 기준은 국가기록원이 제시할테니 각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핵심 고유 업무를 찾아내어 어떤 것을 기록으로 생산해서 관리하겠다고 천명해달라는 의미임. 해야 하는 업무 아닌가? 이것은 기록관이 해야 하는 업무지 기록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 이것 없이는 철저한 공적 업무의 기록화도 없음

○ 지자체 기록관에서 민간 기록을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 아닌가?

⇒ 수집은 이것과 다름. 수집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판단에 따라 공적 업무 기록화의 결락을 보완하기 위해 수집할 수 있음. 그러나 제2호 조항은,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은 기록화를

하겠다, 생산하고 관리하겠다'라고 천명을 해달라는 의미임

○ 공공기록물법에 공무원의 의무도 필요하지만 모든 공공기관 장의 의무를 넣어 기관의 기록관리 체제를 만들 것, 주요업무에 대한 기록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관장의 책임으로 명시함이 어떤가  
⇒ 공공기관 장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려 했는데, 법 전체에 공공기관 장의 책임이 걸쳐있음. 따로 모으는 것이 어렵고 중복될 수도 있음

⇒ 공공기관 장의 책무를 핵심적인 몇 개의 조항만 명시해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법 개정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음

⇒ 기관장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육받아야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했으면 함

⇒ 기록관리체계 수립, 기록관 설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주요 기록물의 기록화 대상 기준 수립,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교육 이수 책임을 기관장에게 주도록 함이 어떤가?

⇒ 검토를 해서 관련 조항을 만들어 보겠음

○ 기록관의 정의도 필요함

⇒ 정의가 각 조항으로 흩어져 들어갈 것이 아니라 도서관법처럼 제3조에 다 들어있어야 함. 물리적 이관과 관리 권한의 이관을 구별하는 이관, 기록관, 무단파기 등이 정의로 규정되었음 함.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 기록관 미설치 대상 기관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어려울 것임. 설치대상 기관을 더 확대하여 확정하는 것이 더 명확함  
⇒ 미설치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이런 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했음. 반영하겠음

○ 법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 설립·운영과 '기록의 날' 제정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 특히 유네스코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재청과 업무가 겹치지 않나?

⇒ 이것은 국가기관이 아닌 국제기구하나를 위탁·운영하는 것임.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을 맺어 청주시에 유산 센터를 짓는 것임. 그 곳에서 대한민국의 기록유산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한 보존 등의 정책 지원과, 지정된 유산을 관리하는 국가의 담당자들의 교육·훈련·연구를 돕는 국제기구가 하나 생기는 것임. 유네스코가 이를 허가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므로 근거조항이 필요하여 신설된 것임. 이것은 조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임.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산하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를 둔다는 어감보다는 세계기록유산의 관리·보존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산하에 둔다로 하는 것이 다른 기관과의 잡음도 없애는 더 좋은 워딩같음

○ 기록의 날도 굳이 법으로 제정해야 하나

⇒ 예산 확보가 좀 더 용이해질 것임

⇒ 많은 단체가 원하는 사항임. 법정기념일로 만들려고도 함. 국회 심의시 민관 협력이 필요함

○ 처벌조항에 비공개 열람 정보를 누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넣어야 논리적으로 말이 될 듯함

⇒ 무단과기 정의와 함께 무단 유출의 정의도 비공개기록을 제한적으로 열람한 후 무단으로 공표하는 행위 정도의 표현으로 들어 가야 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촉직 부분은 기록관리 관련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 정도로 열어놓으면 될 듯함

⇒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한 자 정도면 될 듯함. 중앙부처 기록관 협의회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협의회가 생기는데 이런 곳에서도 추천할 필요가 있음. 나중에는 학회보다 현장 단체가 들어와야 함

- 참석하지 못하신 분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헌법기관기록물관리 기관, 특히 국회 쪽에서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국회의원 의원실에 대한 규정,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 민간기록활동에 대한 지원 요구 등이 있음
- 근본적으로 법 명칭을 국가기록정보관리법, 국가기록기본법, 혹은 간단하게 기록법으로 바꾸자는 요구도 있음
- ⇒ 현재 상황에서 공공을 떼고 기록법으로 가려면 민간에 관련된 내용이 보장되어야 함
- 기록원 위상도 문제가 있음. 스스로의 문제라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높여야할 시기 아닌가?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면 처분 동결제도도 지금의 위상으로는 불가능할 것임
- 참여정부시절 기록관리 혁신 과정을 환기하는 사람이 있음. 당시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 차원에서 기록관리 혁신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동력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국가기록원에서 BH에 협력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음

## □ 자문회의의 운영과 기록관리혁신 추진단 활동 논의

- 기록관리혁신추진단과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현재까지 해온 일에 대하여 겸허히 진단받을 필요가 있음. 추진단과 자문위원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작년 하반기에 외부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TF가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여기서 논의된 것을 상반기에 혁신추진단이 이행하고 있음. 6월 이후의 혁신활동은 국가기록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안팎이 같이 가야하는데 어떤 구조로 가야할지 그려면 함. 따라서 추진단과 자문위원회의 활동보고와 함께 이후의 구조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에 동의함. 혁신이라는 것이 6개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으로 녹아들어 가야한다고 기록원 내부에서 느끼고 있음. 그동안 외부와 내부가 따로 진행되었음이 이상함. 하반기부터는 같이 가는 판을 만들려고 함. 다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에서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지 선행되어야 함

⇒ 책임 있는 논의 단위가 될 수 있을 거라는데 신뢰는 감. 이와 함께 더 넓은 논의가 병행되면 좋겠다 생각이 듦.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기록원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지금인데 이 상황을 잘 진단해야 함.

○ 혁신추진단 게시판 글이나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기록원 직원이 받는 피드백을 모아보면 국가기록원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기록공동체 구성단위임은 확실함. 그러나 다른 단위의 기록공동체는 신뢰받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음. 국가기록원만 신뢰를 찾으려면 되는 문제도 아닌 듯함. 전체 기록공동체가 서로 신뢰를 찾아야함.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신뢰회복을 위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극복해야 함

⇒ 비슷한 의견이긴 하나 기록원이 신뢰회복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책임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들기를 바램. 끝.